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32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신동욱・박준태・김 건

조배숙 · 김소희 · 서천호

엄태영 · 나경원 · 유용원

배준영 • 인요한 • 구자근

이만희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.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·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·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,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.

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

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.

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(안 제151조제4항 등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제4항 후단 중 "갈음할 수 있다"를 "갈음할 수 없다"로 한다. 제15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		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	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		
성) ① ~ ③ (생 략)	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投票用紙에는 中央選擧管理	4		
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			
라 管轄區・市・郡選擧管理委			
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			
다. 이 경우 그 廳印의 捺印은			
印刷捺印으로 <u>갈음할 수 있다.</u>	<u>갈음할 수 없다.</u>		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		
제158조(사전투표) ①・② (생	제158조(사전투표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	③		
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			
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			
"사전투표관리관"칸에 자신의			
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			
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			
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<u>&lt;후</u>			
<u>단 신설&gt;</u>	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		
	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		
	<u>수 없다.</u>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